국민권익위원회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공익신고제도

(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)

신고 주체

누구든지(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)

신고 대상

- 소방검사감리 위반,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
- 방화시설·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·훼손 등 부실 관리
-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
-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·부재의 공급·사용
- 위험물 유출,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 설치

☞ 「소방시설법」, 「건축법」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등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

신고 기관

- 국민권익위원회
- 관할 행정·감독기관(행안부, 소방청, 국토부, 관할지자체 등)
- 수사기관
- 공사 등 공공단체
- 기업의 대표자·사용자 등

신고 방법

인터넷창에 '청렴신문고' 입력

신고자 보호

- 비밀보장
- 불이익조치 금지
- 신변보호
- 책임감면

신고 보상금

- 보상 : 20억원 한도에서 벌금·과징금 등의 최대 20%(내부신고자에 한함)
- 포상 :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

문의처

- 국민권익위원회(www.acrc.go.kr) ⇒ 부패·공익신고 ⇒ 공익신고 상담
-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
- 공익신고자 보호법, 신고사건 처리 : 044-200-7752~7761
-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: 044-200-7772~7779

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

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

-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

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
- 공익신고·협조를 이유로 신분상(해고 등)·인사상(징계 등)·경제적(계약해지 등) 불이익과 정신적·신체적 손상(집단 따돌림·폭행 등)을 받지 않습니다.
-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- 이를 위반할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•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.

- 공익신고로 신고자·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형벌·징계·행정처분이 감경·면제될 수 있으며,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•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신고자·협조자와 그 친족·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.

-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, 이사, 쟁송,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
-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·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(최대 20억원)

국민권익위원회